

2026년 「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」 사업 기업지원 2차 공고

2026년도 산업통상부 「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」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5월

산업통상부장관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

1 지원개요

- **지원규모:** 기업당 3개 프로그램 내 지원
- **지원목적:**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*를 활용한 차세대 바이오뷰티 제품 제조 기업의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시장 진출 촉진
 - * 세포유래, 펩타이드, 국내 자생 천연물 소재,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이를 통한 유기합성,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
(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가 완료된 소재를 대상으로 함)
- **신청자격:**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보유 기업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전국 소재 영리기업

[대상 소재 범위]

- 국내 연구·개발이 완료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뷰티 소재
-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뷰티 소재에 대한 국산화 완료 소재
 - *세포유래, 펩타이드, 국내 자생 천연물소재,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이를 통한 유기합성,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 등

[제품화 및 양산화 대상 제품]

-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별 타겟 특화 바이오융합¹⁾ 뷰티 제품
- 첨단바이오 소재 활용 문제성 피부 치료 효능을 가지는 더마코스메틱²⁾ 제품
- 뷰티디바이스 전용 기능성 제품³⁾ 및 융합기술 적용 제품

- 1) 줄기세포, 엑소좀, 천연방부제, 항생제대체천연물질, 바이오 색소 등 바이오융합 소재 활용 뷰티제품
- 2) 의약품과 유사한 이점을 갖는 피부 질환 개선 바이오뷰티 제품(아토피, 여드름, 탈모 등)
- 3) 미용 및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사용용 미용기기 전용 뷰티제품 및 응용제품

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
 ※※ 공정거래법상 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」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

□ **지원기간:** 협약일~2026. 10. 31.

□ **지원방법**

○ **지원금액**

- 지원내역별 총 금액의 80% 지원, 신청기업 20% 자부담

* 지원금, 자부담금은 부가세 포함으로 산출

- 지원 프로그램별(6백만원~10백만원 내외)

○ **지원형태**

- 지원기관 직접지원을 통한 소재화·제품화·양산화 지원

- 용역업체를 통한 디자인, 마케팅 지원

2 지원내용

□ **지원내역(기업당 3개 프로그램 지원 가능)**

지원분야		지원프로그램	지원업체 수
①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	1. 소재 대량생산 공정 지원	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	1개사
②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	2.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	제품특성에 맞는 제형 관련 기술 지원 및 샘플제작 지원	1개사
	4. 제품명/브랜드/디자인 제작 지원	제품 유형별 맞춤형 포장 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	1개사

□ 상세내용

(1)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

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명	세부내용	지원기관	지원금액	기업부담
소재 대량생산 공정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첨단 바이오 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 - 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량생산 공정 설계 지원 - 유기용매 추출공정, 발효공정, 안정화공정, 분말화공정 등 - 국내외 거래처 납품을 위한 효능 소재 시생산 지원 - 소요예산은 재료구매(원재료, 부재료 등)로 산출(장비사용료X) 	(재)강릉과학 산업진흥원	기업당 1,000만원 이내 (1개사)	총소요금액의 20% 이상

※ 신청시 유의사항

- 국내 연구·개발이 완료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원료이어야 함
 - 바이오 소재 산업화 지원프로그램은 지원기관에서 직접 수행
 - 소요예산은 재료구매(원재료, 부재료 등)로 산출(장비사용료X)
 -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80%만 지원, 신청기업 20% 자부담
- (예) 총 소요금액 1,250만원 = 지원금 1,000만원(80%) + 자부담금 250만원(20%)
- * 지원금과 자부담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

[2]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

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명	세부내용	지원기관	지원금액	기업부담
제품화 샘플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 - 용기선정에 따른 제품 용기 반응 테스트 - 개발제품 반제품 직접생산(레시피 제공에 따른 제주TP생산) 또는 위탁생산(지원 종료 후 지정된 제조원의 생산업체) - 개발제품(샘플)의 원부자재 입고에 따른 완제품 생산지원 - 완제품생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및 생산 관련 서류제공 	(재)제주 테크노파크	기업당 600만원 이내 (1개사)	총소요금액의 20% 이상
제품명/브랜드/디자인 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명/브랜드/디자인 제작 지원 - 제품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 개발 - 기업브랜드(CI), 상품브랜드(BI) 및 상품 구성, 포장디자인 리뉴얼 또는 신규 개발 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에 디자인 관련 업종·업태 필수(인쇄업만 있으면 안됨) - 단순 단상자 구매X, 디자인 개발 및 제작으로 진행되어야 함 	(재)강릉과학 산업진흥원	기업당 1,000만원 이내 (1개사)	총소요금액의 20% 이상

※ 신청시 유의사항

- 제품화·양산화 이후 판매용 제품 생산은 기업 자부담
 - 샘플제작의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직접 수행
 - 샘플제작은 판매용이 아닌 홍보용 제품으로 제작 지원
 - 제품명/브랜드/디자인 제작 지원의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에 디자인 관련 업종·업태 필수(인쇄업만 있으면 안됨)
 - 제품명/브랜드/디자인 제작 지원의 경우 단순 단상자 구매X, 디자인 개발 및 제작으로 진행되어야 함
 -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80%만 지원, 신청기업 20% 자부담
- (예) 총 소요금액 750만원 = 지원금 600만원(80%) + 자부담금 150만원(20%)

* 지원금과 자부담금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임

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6. 5. 6.(수)~5. 19.(화) 18:00 (시간엄수)
- 신청방법: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접수처: o jy@gsipa.or.kr

※ 신청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신청 내역 확인 요청 메일 송부 예정. 확인 마감일까지 회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, 누락된 신청 건이 없다고 판단 후 선정평가 진행하며, 이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지지 않음

○ 문의처

프로그램명	소재 대량생산 공정 지원, 제품명/브랜드/디자인 제작 지원		제품화 샘플제작 지원	
담당자	김광우 소장	오지연 주임	진희철 수석	문정호 연구원
연락처	033-650-3355 / gwkim@gsipa.or.kr	033-650-3375 / o jy@gsipa.or.kr	064-720-2357 / coolguy@jejutp.or.kr	064-720-2353 / mjh7442@jejutp.or.kr

□ 필수 제출서류 (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)

- 1) 사업계획서(신청서)(붙임 1. 참조)
- 2) 수혜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(붙임 2. 참조)
- 3) 중복지원금지 협약서(붙임 3. 참조)
- 4)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(붙임 4. 참조)
- 5) 제출서류 체크리스트(붙임 5. 참조)
- 6) 사업자등록증 사본
- 7) 최근 2년간 재무제표(단,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
 - ※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
- 8) 4대보험 가입자명부
- 9) 공급업체(또는 용역업체)에서 발급된 견적서 1부와 비교 견적서 1부
- 10) 공급업체(또는 용역업체)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※ 기업에서 신청하는 지원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 공급업체(또는 용역업체)는 신청기업이 지정하여 신청

□ **추진일정** (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공 고	⇨	접수	⇨	서류심사	⇨	발표심사	⇨	결과통보	⇨	협약체결	⇨	지원수행 및 결과제출
2026.5.6. ~ 2026.5.19.		2026.5.6. ~ 2026.5.19.		2026.5.21. ~ 2026.5.21.		2026.6.4. ~ 2026.6.5.		2026.6.8.		2026.6.9.~		~2026.10.31

□ **지원방법 및 기업부담금**

- **강릉과학산업진흥원(제주테크노파크) - 선정기업 - 공급업체(또는 용역업체) 간 3자 협약**
- **선정기업은 지원내역 총 소요금액의 20% 자부담 필수**
 - 수행기간 내,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 투입 기재에 대한 수혜기업 현금성 지출금액의 합계로 증빙(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)
 - ※ 생산 지원의 경우 원료(현물)로 가능하며, 외부용역의 경우 총소요금액의 20% 이상 현금 부담
 -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, 지원금은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 불가

□ **결과물 제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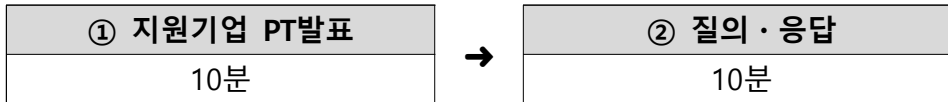
- 수행 내용에 따른 결과물 및 성과 관리 내용에 대하여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함
-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선정기업 대상으로 지원제품에 대한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 - ※ 제출한 자료는 본 사업의 실적 보고용으로만 활용됨
- 수혜기업이 제출한 수행 결과물은 지원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(제주테크노파크)에서 검토 및 평가 가능

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평가방법

- 서류심사(1차): 지원분야, 신청자격, 필수 서류 제출 여부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
 - ※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, 그리고 공급업체(또는 용역업체)와의 특수관계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서류심사 탈락될 수 있음
- 발표심사(2차): 지원기업 온라인 PT 발표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
 - ※ 온라인 발표심사로만 진행되며, 온라인 링크는 평가 1일 전 실무책임자 메일로 공유 예정(메일 확인 필수)
 - ※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(발표심사 개별 연락)

□ 발표심사 절차: ① 지원기업 PT 발표 → ② 질의·응답



- **평가기준:** 적합성, 내용 및 범위, 필요성, 기업역량,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
- **결과발표:**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선정결과는 개별 메일 통보

5 기타 유의사항

□ 유의사항

- 신청 및 선정 관련
 -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결과는 개별 통보함
 - 허위 사실 기재, 중복 지원, 선정 후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환수 및 1년간 참여 제한
- 지원 내용의 조정
 -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및 프로그램, 수행 기관 등이 변경될 수 있음
- 사후 관리 및 협조 의무
 -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(증빙 자료 제출) 협조 필수
 - 미협조 시 향후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계획 수립 원칙
 - 지원계획서 내 모든 목표치는 실현 가능한 수치로 작성하며, 기타 사항은 반드시 사전 문의 후 확인 요망

□ 지원제외 대상

- 부정행위: 서류 허위 작성, 동일 과제 중복 수혜
- 부적합 과제: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 내용
- 채무 및 제재
 - 정부 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또는 참여 제한 중인 경우(기업·대표자 포함)
 - 금융 불량 거래 및 신용등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
- 업종 제한: 소비·향락업, 인력 공급업(용역), 금융·보험업, 숙박·음식업 등
- 기타: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협약서

[사업명: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
지원사업(*지원프로그램명*)]

○ 과 제 명	
○ 협약기간	2026년 월 일 ~ 2026년 10월 31일
○ 사 업 비	금 천원(지원금 천원, 기업부담금 천원) ※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은 VAT포함
○ 협약당사자	(지원기관)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 장 김남수
	(수혜기업) 대 표
	(공급업체) 대 표

「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사업(*지원프로그램명*)」 기업지원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기관, 수혜기업,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사업(*지원프로그램명*)”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사업목표 및 내용) ① “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사업(*지원프로그램명*)”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목표와 내용과 동일하다.

(이하 생략)